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

## -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 평가와 제언을 중심으로 -

김경미\* · 최윤지\* · 이진영\* · 고운미\*\*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 공주대학교 강사

###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Woman Farmers by Role Types in Korea

Gyung Mee Gim\* · Yoon Ji Choe\* · Jin Young Lee\* · Woon Mee Koh\*\*

\*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 Lecturer, Kongju National University

####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analyze the upbringing policy for woman farmers in Korea, b) to find out the needs for the policy related to women's roles in decision making of farming activities, and c) to promote the programs in agricultural system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and need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ions with the panel of experts witnes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First of all, the policy for upbringing woman farmers had been improved, however, policy measures were still inadequate and were plenty of room for development.
- 2) Government policies were not focussed directly to meet the actual needs of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various roles.
- 3) More government efforts should be enhanced to modify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for rural women, and should be organized into the practical programs after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 4) The five-year upbringing plan for woman farmer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strengthening economic power, widening woman farmers' influenc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capacity and strengthening of self-enlightenment, better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and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farmers

**Key Words :** Rural Women, Rural Women's Role Types, The Five-Year Upbringing Plan for Woman Farmer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력의 52%를 담당하고 있는 당당한 농업경영자이고, 전통문화의 계승, 각종 사회 봉사활동 등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영농형태가 미작 위주에서 점차

소득이 높고 노동력 투하가 많은 원예작물, 축산 등으로 변화하면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에의 참여와 역할은 다양화되고 가사 뿐 아니라 영농일까지 담당하는 등 그 부담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합당한 사회적 지위는 부여받지 못하면서, 가사와 농사의 병행, 육아문제 등에서 도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미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 및 정치권 등에서 입

법활동과 여성정책추진이 활발하게 진전되어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고,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흡하며,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의 지속성 유지와 후계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연구는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비해 지위는 정치적으로는 각종 농업관련 단체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기회가 막혀 있으며, 국가 제반정책이나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정책 수립과정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과 기술교육은 주로 남성경영주 중심인 데 반해 EU, 일본 등은 이미 농가를 최소법인 경영체로 인정하고 가족 내 여성의 법적 지위 규정,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건전한 농가경영체 육성, 전문적 농업후계인력 확보, 안정적 농가 지원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의 지위 향상(gender equality)이라는 국제적 이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작단계로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4개 핵심영역으로 구분하여 15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농업인 육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여성농업인단체 교육 지원 등이며, 그 밖에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가의 안정적 복지정책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여성농업인은 이들 정책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김경미 외,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에서 발생된 영역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입법 활동과 여성정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응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변화추세에 부응한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현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남성농업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계획은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분석한다.

둘째,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분야별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II.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

우리나라 영농의 형태가 논벼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농가여성의 농업 노동 참여가 크게 증대되고,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입법 활동과 여성정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응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더불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추세에 부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첫째, 여성농업인의 신기술 및 신지식농업에의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 둘째,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위향상 촉진, 셋째,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 넷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주요 핵심영역으로 설정한 배경을 보면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다(농림부, 2000).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농업환경에의 대응능력으로 설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농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의 확보를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속하는 세부사업으로는 크게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영농활동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전문교육 및 훈련(정보화교육, 영농기술교육, 전문농업경영교육), 전문교육시스템 구축(전문교육 프로그램 표준모델 및 강의안 개발, 전문강사 훈련 및 D/B 구축, 학습동기 유발, 전문교육환경 구비), 선진해외농업 연수 등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농활동 지원으로는 후계여성농업인 육성(2004년부터는 신규창업농 지원 중 여성에 대한 우대지원으로 전환),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등을 편성하고 있다.

정보화교육의 경우 여성농업인 참여목표를 초과달성(35%→37%) 하였고 농림부 홈페이지에 있는 ‘여성농업인광장’을 개편하여 여성농업

인 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욕구 해소와 참여 활성화 공간으로 재정립한 점, 여성농업인 전문강사 훈련을 위한 교관반 교육은 연간 6회 입교하는 과정임에도 교육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입교율이 높고 수업분위기 혁신은 물론 교육생의 셀프 리더십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후계여성농업인 선정 비율도 목표 20% 보다 초과 달성한 25.1%로 양적 증가를 보인 점 등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미영(2003)은 이 사업이 소수의 엘리트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계별, 체계별 지속적 교육과 사후체계 및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시스템 마련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이 보이지 않으며, 중앙단위 교육은 접근성에 제한이 따르고, 정보화 교육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정보조차 제한되어 있고, 후계여성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교육기회의 편중이 여전하다고 하였다. 해외연수 역시 도별로 인원배정 후 시군 단위에서 추천을 통해 참가자를 결정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50%로 높아 부부간 선택이 문제가 되어 여성농업인의 참여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경미 등(2004a)에 따르면, 후계여성농업인에 대해 70.3%가 관심 없다고 하였고, 조사대상 중 현재 후계자인 여성은 9.5% 수준인데 이 중에서 스스로 농업경영주가 되고 싶어서 후계여성농업인이 된 경우는 50%(전체의 4.7%) 수준이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하여는 남편을 통해서가 38.2%, 마을주민을 통해서가 28.5%로서, 여성농업인이 주도적 혹은 능동적으로 농업경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후계여성농업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후계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실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농기계를 다루기 어렵다는 여성의 비율도 72.2%에 이르고 있어 단순히 농기계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영농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을 보면 농기계가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다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농기계 운전은 배우기 싫어하는 대다수 여성의 공통된 태도는 “지금도 일이 많은데, 농기계 운전까지 하면 남자들은 잘 되었다 하고 손놓고 밖으로 나다니면 나(여자)의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할 줄 모른다고 한다”고 할 정도로 노동량 가중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남편인 남성농업인에 대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는 경영의 과정은 물론 결과로서 나타나는 수입(소득)의 분배와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물에 대한 경영자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 그에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여성의 농업경영참여가 여성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김경미, 2003; 심미옥, 1997)에서 여성의 농업생산 활동 참여가 의사결정, 소득배분, 경영의 대표권의 확보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이 추구하는 정책목표, 전문능력이란 개념이 경영능력 향상에 필요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은 <표 1>과 같다.

## 2.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 영역 추진방향은 농업노동·가사노동 및 지역사회의 활동 등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위상의 재정립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촉진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구성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다. 그

중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확대, 협동조합 참여 확대, 여성단체 위탁사업의 활성화, 단체활동 지원, 전문 직업의식 고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의 경우 여성이 농협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사업부문 업적평가지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여성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19.6%이던 여성조합원 비율이 2003년에는 23.6%로 신장되었고 대의원수, 임원수도 같은 기간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농촌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호응도가 높으며 종합복지기능 확산을 위해 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경미 등(2004a)도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는 남성 위주의 구성·조직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경험이 부족하므로 여성농업인 중 전문성 가진 인력(리더)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협동조합원 참여의 경우도 이 연구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30.7%이었으나 이 중 활발하게 회의와 교육에 참석하는 비율은 44.1%, 38.8%로 가입한 모두가 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충남 논산)”고 하는 사례가 있듯이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김경미 등(2004b)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협동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여성이 모두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원이 된다는 사실만큼 적극적인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제도적으로 협동조합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의원의 경우에도 할당제에 의하여 여성의 대의원이나 이사 등 임원직 진출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정숙(2003)에 의

〈표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기본 전략	주요 정책과제	세부 사업	분석 (사례·문헌)	평가·개선·검토 방향
(1) 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교육</li> <li>• 영농기술교육</li> <li>• 전문농업경영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농민 대상이 아니라 일부 소수 농민 대상의 교육 (여성농업인후계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대상이 여성농업인후계자로 한정)</li> <li>• 중앙에서 교육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어려움</li> <li>• 새로운 농업기술 획득 기회저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위주의 일반 농민을 위한 방문 교육 필요(영농시기 등 현실적인 참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li> <li>-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계적, 체계적 교육</li> <li>-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교육 기회 확대</li> </ul>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교관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인 운영의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관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의 활용방안 필요</li> </ul>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 농촌진흥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 50%로 여성농업인의 현실적 참여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필요에 의한 농업연수의 시행 및 지원 필요</li> </ul>
(2)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여성농업인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후계자에 대해 관심 없다(70.3%), 현재 후계자 14명(전체 9.5%)중 농가경영주가 되고 싶어서 된 경우 7명(50.0%)</li> <li>• 알게 된 경로가 38.2%가 남편에게서 듣고, 28.5%가 마을주민에게서 들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경로가 남편으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마을주민으로 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유도 필요</li> <li>- 여성농업인 후계인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 필요</li> <li>- 여성농업인 후계인 비율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킬 필요 있음</li> <li>- 지원 대상사업분야 확대</li> </ul>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농사용 농기계 개발 및 현장점목시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농기계의 보급실적 없음</li> <li>• 농기계 다루기에 대해 72.2% 어렵다고 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작물 농기계 개발과 보급 지원</li> <li>- 농기계 보급을 위한 비용 등 해결</li> </ul>

하면 이사 8명 중 1명을 여성에게 할당하였으나 선거운동에서 대다수 남성인 대의원에게 자신을 알리기 어려웠고,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이 모자라 생소한 것에 대한 어려움, 실제로 의사결정 할 때 혼자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전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감,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익의 대변 가능성 확대, 여성 스스로 먼저

포기했던 권리들에 대한 재인식, 지역사회에 새로운 리더로서 역할 수행 등 이점이 많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변화와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은 궁극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대표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력화하는 수준까지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농업인센터는 매우 특별한 시도라고 여겨진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여성농업인 리더이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신청하게 된 동기를 보면(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3) 여성농업인 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다. 그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상담사업도 관심이 높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농촌정착 프로그램 수행,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및 문화수준 향상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센터는 주로 보육 및 방과 후 공부방 운영과 같은 자녀교육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사업의 형태나 각 지역 센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차이가 있어 필수사업을 축소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해 왔다. 이와 같은 사항은 <표 2>와 같

다.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역할에도 그들이 농업·농촌 관련정책의 대상으로서, 직업적 농업인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 영역의 사업들은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 기여에 대한 정당한 지위 인정제도 마련 및 노동가치 평가,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인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 여성농업인의 상담, 교육, 보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는 한편 이러한 단체활동과 교육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리더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대표할 수 있는 세력화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2>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

기본 전략	주요 정책과제	세부 사업	분석 (사례·문헌)	평가·개선·검토 방향
(1)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농업인의 참여율 저조</li> <li>남성 위주의 구성</li> <li>조직경험 부족</li> </ul>	-여성농업인 중 전문성 가진 인력 양성 필요(리더 양성)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원: 30.7%</li> <li>참여도 낮음(회의: 44.1%, 교육: 38.8%)</li> <li>적극적 활동 동기 부족</li> </ul>	-제도적 홍보와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확대
	여성단체위탁 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생활개선 사업</li> <li>농소정사업</li> </ul>		-여성농업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보기 어려움
	여성농업인 단체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사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배려 없음</li> <li>가부장적/소극적 의식 팽배 (보조적 위치에 만족)</li> </ul>	-다양한 사업에의 지원 필요 -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의식함양 필요
	여성농업인의 전문 직업의식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농업인단체 행사 지원</li> <li>여성농업인 표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농업인단체행사 지원 예산 감소</li> </ul>	-여성농업인 표창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관리 필요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18개소 운영</li> <li>지역의 특성 고려 않고 일률적 ex) 아동보육사업문제</li> </ul>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인정

###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유능한 여성세대의 안정적인 농촌정주를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등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제도의 정착 등이다. 모자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 저소득 농가의 편부모농업인(경영주) 인문계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을 1.0ha 미만 농지소유 농가에서 1.5ha 미만 농가로 확대하고 2003년부터는 해당농가 모든 농업인의 실업·인문계 고교생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을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다. 이상의 관련 자료는 <표 3>과 같다.

또한 농가도우미의 경우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앞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농가도우미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율은 낮다. 이는 현재 농가도우미가 출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적은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농가도우미 이용에 대한 부담, 이용절차의 간소화 필요, 도우미의 자질 문제 등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김경미 등, 2004a; 농림부, 2003). 따라서 농가도우미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지원액 확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도우미 교육 기능, 도우미 관련 보장보험제도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림부에서는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나 지원단가가 낮고 이용절차가 까다로와 우선 2004년부터 지원단가를 상향조정(27→30천원)하고 이용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온 점은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출산 외에 본인 및 경영주의 질병·사망

<표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기본 전략	주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분석 (사례·문헌)	평가·개선·검토 방향
(1)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모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년부터 모자, 부자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농업인에 대하여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지원범위 확대</li> <li>들어 본적 없다가 전체의 49.3%, 지금 이용하고 있다 2.7%, 이용하고 싶으나 절차의 방법 모름, 2.0%</li> <li>☞ 충남 신OO씨: 예 들어봤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엔 하려고 그래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농업인 정책이라 보기 어려움</li> <li>-정책에 대한 홍보와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li> </ul>
(2)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농가 도우미제도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력 부족으로 농가도우미 필요</li> <li>농가도우미 이용에 대한 부담 큼</li> <li>농가도우미에 대한 인지도: 38.7%; 이용해 본 사람 2.0%</li> <li>현실적으로 도우미의 자질 문제</li> <li>☞ 충남 신OO: 도우미 같은 거는 있는데요.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일을 그런 걸 다 시키려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고 진짜로 빨리 해야 하는데 그때는 도움을 좀 받고 싶어도 더 일을 못할 거 같아요. 능률이 더 안 오를 거 같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도우미 홍보 강화</li> <li>-농가도우미에 대한 국가지원액 확대</li> <li>-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필요(질병 및 상해 치료 시 59.3%로 가장 요구 높음)</li> <li>-도우미 교육 기능 필요</li> <li>-도우미 관련 보장보험제도 운영</li> <li>-도우미신청 등 간소화</li> </ul>

등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 농업·농촌 종합대책이나 ‘삶의질법’의 세부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평가한 김미영(2003)은 여성농업인의 기본권이 될 수 있는 출산, 보육, 교육, 보건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권 확보를 강조하면서 모자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제도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사업들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한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농촌에 남아 있으면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 특히 노인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사업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경미 등(2004a)도 2003년부터 모자, 부자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농업인에 대하여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많으며(들어본 적 없다 49.3%), 이용하고 싶어도 절차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2.0%)도 있었다. 이는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를 통해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 여성(충남 신○○)은 이러한 정보를 남편에게서 듣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남성농업인을 통해 정보가 여성에게 전달이 된다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역설적이게도 이 제도가 직접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정책대상으로 고려하는 관점에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2.7%) 것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만한 대상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편부모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빈곤농가의 생계지원과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농가단위에 대한 지원정책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으로 등식화하는 것을 좀 더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는 점(농가단위의

정책은 자칫 여성농업인을 무의식적으로 간과할 위험이 있음),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여성농업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수요자가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경우에 전체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상별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 4.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성 인 지적 정책개발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4) 참조).

그동안 수행해온 정책과제 개발연구를 보면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성 분석,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농업경영/리더십/자녀교육과 가족/ 문화와 건강 등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 복지지표의 개발,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노인복지실태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등이 농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농가도우미제도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 성 평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방안과 지위지표(GEIA :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Agriculture) 개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 및 질적 기준 설정, 농업 참여 역할 유형별 제도적 지원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되어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정비로는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정책개발 기능 강화 및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농림공무원 대상 여성정책반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여성정책 및 농촌복지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를 2회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정책수행 인프라 및 양방향 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전문가·관계기관 협의회를 정



〈표 4〉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기본 전략	주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분석 (설문·사례·문헌)	평가·개선·검토 방향
(1) 여성농업인 정책과제의 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과제</li> <li>- 여성농업인의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의 개발연구사업에 실질적인 현장 여성 농업인의 요구 반영</li> </ul>
(2)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특강 실시</li> <li>• 여성정책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나 부 내에서의 위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li> <li>• 시도 자치단체의 경우 여성농민정책과 사업을 전담할 부서나 전담자가 거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의 부족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의 일원화와 체계화 필요</li> <li>- 전문인력 마련과 여성 농민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도우미 등의 도입</li> </ul>

례화하고 각 도에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설치를 유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성부(2001)에서는 정부부처 내 성 인지적 정책 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면, 정책담당자의 남녀평등의식 제고, 정책결정구조의 성 대표성 확보, 정책의 성 평등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성 인지적 통계 생산, 정책단계별 성 인지적 관점의 평가기준 개발, 성 인지적 정책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강화 등), 기존의 차별개선과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수정 보완,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교류와 정책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사업집행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이행 상태 점검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현재는 여성농업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도 미흡한 상태이어서, 여성농업인의 정책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더불어 성 인지적 여성정책과제의 개발과 연구 및 성 인지적 농업 통계 생산 등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 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평가를 한 결과, 첫째, 영역목표는 넓고 사업구성은 미시적이었으며, 둘째, 기존 사업 중심의 계획으로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체계적인 사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협업배우자, 공동경영주 위치에서 필요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질적 요소) 등이 누락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목표영역을 재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평가 및 제2차 계획 수립 방향

### 1)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2001~2005) 계획 평가를 위한 준거와 Guide Line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2001~2005) 계획 평가를 위한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 150농가 부부 면접조사, 사례조사 결과 및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내용 중심의 평가를 위한 guide line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안을 전문가 패널토의(2004. 7. 8, 15명) 및 전문가 협의(3회)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우선, 여성농업인육성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은 누구이며, 앞으로 누구를 정책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둘째, 여성농업인의 미래 모습은 어떤가? 농업인인가? 셋째, 현재 여성농업인이 관련되는 제도와 정책은? 넷째,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현실적 문제들은?, 다섯째, 여성농업인 정책의 목적 또는 목표는?, 여섯째, 여성농업인이 요구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는? 일곱째, 누가 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평가할 것인가?, 여덟째, 어떻게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제 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평가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평가를 위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영역 구성의 적합성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과 연계성, 둘째, 여성농업인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영역 구성 방향과 사업내용의 새로운 구성 가능성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1차)은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

<표 5>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평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경영주체로서의 자각이 확산되는 등 성과가 점차 가시화</li> <li>○ 5개년 기본계획 시행 3년차로서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을 통해 여성농업인정책의 연차별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대 구축</li> <li>○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 영농기술교육 등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농업인 교관반을 2년차 운영하여 리더육성과 경영혁신 선도 기반 조성 - 농림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광장”을 개편하여 여성농업인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공간으로 재정립</li> <li>○ 후계여성농업인 선정비율 25.1%로 목표(20%)를 초과달성하고 여성농작업용 농기계를 지속 개발하여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li> </ul>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체계 미흡으로 전문농업인으로서 정당한 농업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li> </ul> </li> <li>○ 여성농업인의 후계농업인 선정기회가 적고,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저조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부담 과중(여성농업인후계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대상이 여성농업인후계자로 한정)</li> <li>○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후계농업인 선정 우대방안 모색 및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필요</li> </ul>
평가 및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교육, 영농기술교육, 전문 및 초급농업인교육 등</li> </ul> </li> <li>○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교육모델 및 교재 개발, 전문강사은행 운영, 전문교육기관 건립 추진</li> </ul> </li> <li>○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발작물 농작업의 기계개발 및 보급</li> </ul> </li> <li>○ 현장위주의 일반농민을 위한 방문교육 필요(영농시기 등 현실적인 참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단계적, 체계적 교육 실시</li> </ul> </li> </ul>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연구 및 기초조사 연구의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정책과제 연구 및 성 인지적 통계 생산</li> </ul> </li> <li>○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 정책추진체계 구성</li> </ul>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전달체계의 미확립으로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저하</li> <li>○ 여성농업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미흡으로 여성농업인의 정확한 정책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움</li> </ul>
평가 및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의 개발연구사업에 실질적인 현장 여성농업인의 요구 반영</li> <li>○ 전문인력 마련과 여성농업인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도우미 등의 도입</li> <l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및 추진체계의 일원화와 체계화 필요</li> </ul>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5.9%로 목표(36%)를 유지하여 양성평등적 농업정책 추진의지를 반영</li> <li>○ 협동조합의 조합원, 대의원 등에 여성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협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대표성 확보에 기여</li> <li>○ 우리농산물 우수성 홍보, 도·농교류사업, 단체의 자체 교육훈련 지원 등 여성농업인 단체의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사회의 유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뒷받침</li> <li>○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생활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고, '04년 사업량을 확대(18→27개소)하여 종합복지기능을 점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li> <li>○ 농가도우미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성보호 및 영농의욕 진작에 기여하였고, '04년에는 지원단가 인상(27→30천원) 및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li> <li>○ 농업인의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당초 편부모 농업인 자녀에서 1ha 미만 전 농가 자녀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04년에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1.5ha까지 확대</li> <li>○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을 '04년부터 도입함으로써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를 통해 농어촌지역 사회 활력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li> </ul>
미흡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필수 노동력이면서도 중심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자긍심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과 가사 노동 및 자녀교육 등 어려운 여건과 도시생활과의 격차로 인해 전반적인 사기 저하</li> </ul> </li> <li>○ 남성위주의 조직 구성 및 참여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참여율 저조(동기 부족)</li> <li>○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배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부장적/소극적 의식 팽배(보조적 위치에 만족)</li> </ul> </li> <li>○ 여성농업인단체행사 지원 예산 감소</li> <li>○ 여성농업인센터 현재 18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특성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함</li> </ul> </li> <li>○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홍보 미흡</li> <li>○ 농가도우미 이용에 대한 부담 큼</li> </ul>
평가 및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중 전문성 가진 인력양성 필요</li> <li>○ 제도적 홍보와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확대</li> <li>○ 여성농업인이 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의식함양 필요</li> <li>○ 여성농업인에게 주체적 직업의식과 농업경영에 대한 성취동기의 부여 및 농촌생활에 활기를 주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li> <li>○ 여성농업인의 상담·교육·보육·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지원 필요(지역특성을 고려한 운영)</li> <li>○ 정책에 대한 홍보와 여성농업인 접근성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li> <li>○ 농가도우미에 대한 국가지원액 확대 및 홍보강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필요</li> </ul>

〈표 6〉 평가모형 설정 및 2차 계획 수립방향

평가모형 설정	
EU 기본틀 전략 5가지 영역 (2001~2005)	① 경제생활, ② 동등한 참여와 대표성, ③ 사회적 권리, ④ 시민적 생활, ⑤ 성역할과 편견
조우철(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li> <li>-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고용기회 균등기반의 확립, 여성고용의 촉진,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li> <li>-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등)</li> <li>-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여성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권익신장,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li> <li>-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li> <li>-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통일에의 기여)</li> </ul>
여성특별위원회 (2000)	남녀차별적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문화/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2)	일본 구마모토현: 여성의 주체성 존중,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세력화, 파트너십
농림부(200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연구,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업무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평가모형 설정 및 2차 계획 수립방향

이상의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영역 목표는 넓고 그에 따른 사업구성은 미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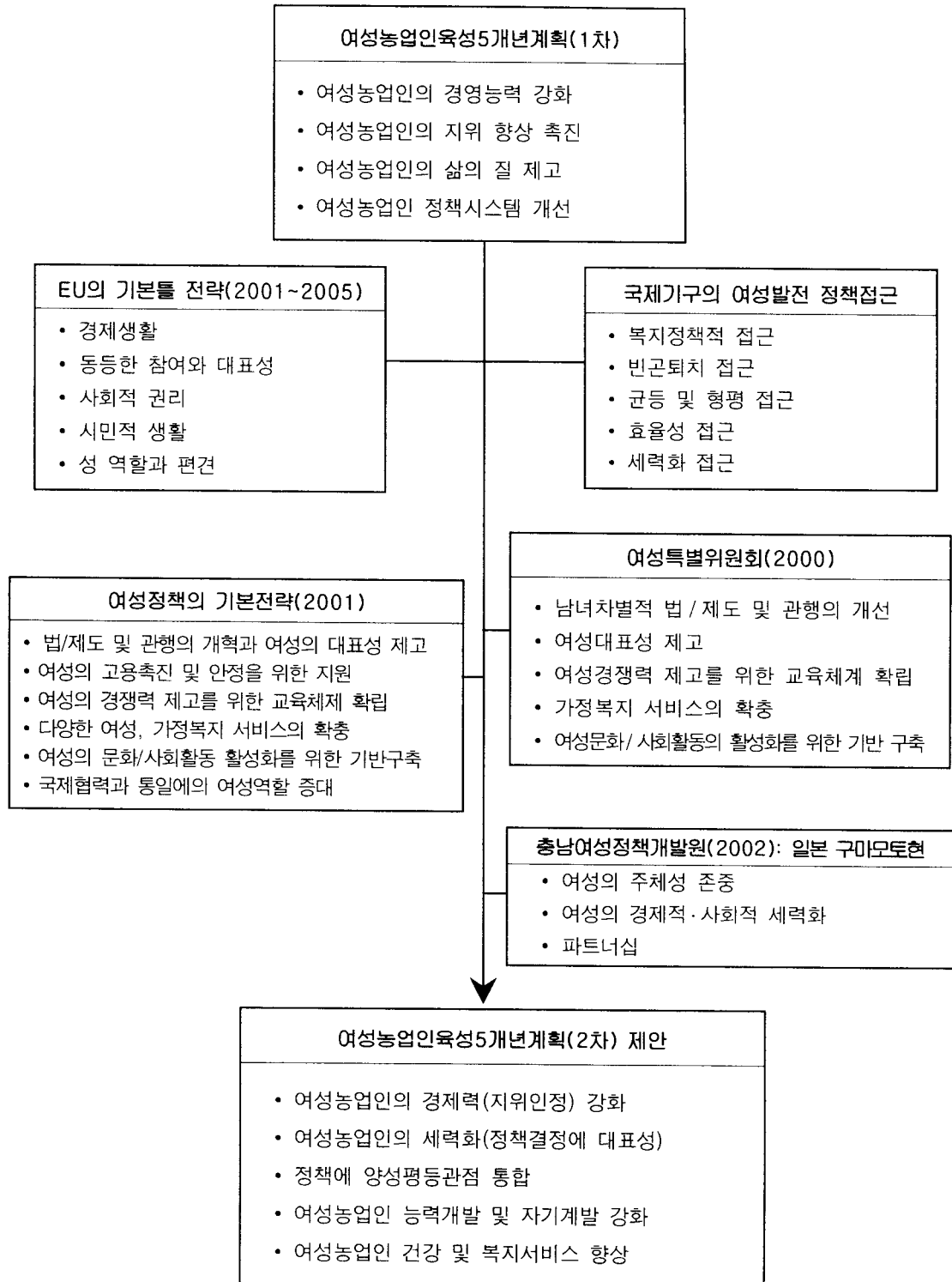
둘째, 기존 사업 중심의 계획으로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과 지위 향상에 기여를 위한 체계적 사업 개발에 한계가 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협업배우자, 공동경영주 위치에서 필요한 경영능력 향상방안이 누락되어 실질적인 요소를 향상시키는데 부족하다.

이를 통해서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

획에는 종합적 목표영역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5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4영역(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5영역(여성농업인의 경제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세력화,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자기개발 강화,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여성농업인 건강과 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확대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를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 정책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도출과정은 〈그림 1〉 같다.



〈그림 1〉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 정책 영역 설정

결과적으로 현재, 4영역(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5영역(여성농업인의 경제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세력화,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자기개발 강화,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여성농업인 건강과 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확대하여 재구성하였으며(참고 <그림 1>), 각 영역별 세부 추진항목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경제력 강화이다. 이 사업영역으로는 총 6항목으로 구성되며, ① 여성농업인의 지위 확립, ② 가족 내 자원 배분 및 의사결정 지위향상, ③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적용 : 여성 등 가족종사자 노동가치 평가, ④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농외 전직(취업), 겸업, 소규모 창업 등, ⑤ 농업부문 정규/비정규 노동자로서 근로조건 개선, ⑥ 모성 보호로서 가정과 직장(농업종사) 양립환경 조성: 도우미제도 등 여성농업인 부양부담 완화, 보육서비스 등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세력화이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영역으로는 총 6항목이며, ① 공공부문 의사결정 참여 확대, ② 정치적 대표성, ③ 민간부문 관리직 진출 촉진으로서 농협이사 및 대의원, 생산단체 참여 등, ④ 지역단위 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에 여성참여 촉진, ⑤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GO-NGO, NGO-NGO,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⑥ 평화, 통일, 환경정책 등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 강화이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 및 자기개발 강화이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영역으로는 총 9항목이며 다음과 같다. ① 농업전문인력(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으로서 직업적 능력(농업기술, 농기계사용, 유통 및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및 관리, 시장동향 분석 등) 함양, ② 평생교육과 참여조건 개선, ③ 자기 정체성 강화, ④ 정보화 촉진, ⑤ 리더십 배양, ⑥ 상호 학습조직 육성, ⑦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

대, ⑧ 자기개발의 여건(시간자원의 균형성-여가, 사회문화시간 등), ⑨ 기초능력 갖추기이다.

넷째,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통합(여성농업인 고려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 사업영역으로는 총 7항목으로, ① 성 인지적 예산 및 추진기구, ② 정책의 성별 분석기반 조성, ③ 농촌지역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④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능력개발, ⑤ 기초실태 분석: 성 인지적 통계 생산, ⑥ 중앙 및 지자체 단위 기본계획 수립, ⑦ 정책 평가 및 감시, 조정기능이다.

다섯째, 여성농업인 건강과 복지 서비스 향상(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영역으로는 총 6항목이다. ①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모니터링, ② 여성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연금수급권 등), ③ 여성노인 서비스 확대(취업능력, 상호care 등), ④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 농가와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⑤ 정착 외국인 여성, 귀농 외국인(연수생) 및 가족 등, ⑥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농가에 관한 사항이다.

### III. 결 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 정책 시스템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역의 목표는 넓고 사업구성은 매우 미시적이라는 점, 기존사업 중심의 계획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 사업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여성농업인의 역할 측면에서 협업배우자 또는 공동경영주의 위치에서 필요한 경영능력 향상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육성 1차 5개년 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화 하기 위해서는 미래 모습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제 2차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합적 목표영역을 4영역을 위에서 제안한 대로 5내지 6영역으로 구분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경제력 강화, 둘째 세력화(정책결정에 대표성 제고 및 연대 강화), 셋째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및 자기개발 강화, 넷째 여성 건강과 복지 서비스 향상(폭력예방과 인권 보호 강화 포함), 다섯째,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여성농업인 고려 강화) 및 여성에게 직업적으로서 농업인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 정비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화 및 수요자의 참여를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이 수행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각 지역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에 체계적인 틀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의 지속력을 갖기 위해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고 자율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정책개발연구 기반 등) 확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여성농업인들의 공통적이면서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고,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에 따라 정책을 인식하는 정도와 요구사항에 있어서의 차이를 토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여성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만족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V. 참고 문헌

1. 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인정방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pp. 7-38.
2. 김경미 외, 2004a,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별 제도적 지원방안.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제1년차 보고서. pp. 3-41.
3. 김경미 외, 2004b, 여성의 농업종사 유형분류 및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3년도 농촌생활과학 연구(시험연구사업 보고서). pp. 355-382.
4. 김경미 외, 2004c, 여성농업인 지위 지표 개발 및 평가연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3년도 농촌생활과학 연구(시험연구사업 보고서). pp. 383-407.
5. 김미영, 2003, 여성농민정책 평가와 발전방안 심포지엄: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와 과제 -. 발표자료.
6. 김영옥·김이선, 1999, 21C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7.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8. 김주숙, 1994, 한국 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9. 김주숙, 1996, 농촌여성 문제와 정책과제.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10. 농림부, 2000,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1~2005).
11. 농림부, 2001, 각종 농업정책의 성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12. 농림부,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3.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4, 2004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14. 농촌생활연구소, 2000,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15.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2, 여성의 농업종사 유형 분류 및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16. 농촌진흥청, 1997, 농촌여성의 역할수행 및 지위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17.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료.
18.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 농촌여성 문제 및 복지 증진 방향 - 진주시를 중심으로 -.
19.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2002,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연구 전문

- 가협의회 자료.
20.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2003,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연구 전문 가협의회 자료.
  21.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연구. 제 1년차 보고서.
  22.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2004, 여성농업정책 대 토론회 자료집.
  23. 박대식, 2002, 농촌사회의 변화전망과 바람직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농촌생활과학, 23(1):74-79.
  24. 심미옥, 1997, 농촌여성의 지위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여성부, 2001, 정부 부처 내의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6. 이정숙, 2003,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 충남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모색 워크숍 자료.
  27. 전정숙, 1994, 농촌유형별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전종철, 1999,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생활과학, 20(1), pp. 44-50.
  29. 조우철, 2000, 중앙정부의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자료집.
  30. 조홍식 외, 2000,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3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여성농업인 정책 비교연구.
  32. 한국여성개발원, 2000,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5년 4월 6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